

##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 제20조(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)

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(보호자)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(등외 판정),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, 노인복지법 제34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서(변경확인서, 변경계약서)를 작성하여 서명동의를 받는다.  
가.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  
나.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.  
다.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#### 1. 계약기간 :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

단,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

#### 2. 계약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#### 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(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)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,  
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,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% 부담
- ③ 방문요양의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 
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<별첨1>에 의한다.

#### 4.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#####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.
-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(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)
-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- 급여제공범위와 직원의 대우에 관하여 안내를 요구할 수 있다.
-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-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
##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.
-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.
-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.
-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
-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.

## 5.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

###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수급자의 신변의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.  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.)
-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가 있다.

### ② 수급자의 의무

-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가 있다.
-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.
-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
### ③ 수급자의 권리

-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  -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  -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  -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,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  -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  -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, 비용(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)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.

## 6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## 7. 기타

-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(보호자)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,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,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, 180분, 150분, 120분, 90분,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.
-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기간, 서비스내용 및 시간, 서비스 장소,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, 급여제공범위,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,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1부를 제공 한다.
-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목욕, 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등)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